

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2023.09.21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(이하 '사업단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
3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
4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5. 사업 실적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3조 (조직)

- ① 사업단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.
- ② 사업단에는 필요에 따라 부단장과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사업 추진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단장)

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,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위원회 설치)

- ①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추진위원회와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사업운영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사업추진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지침과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.
- ③ 추가 신설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세칙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법

를, 법령, 규칙, 훈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3.09.2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